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4나202622 판결 [건물명도]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4나20262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2가단703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C

변론종결 2024. 7. 19.

판결 선고 2024. 8. 30.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2가단703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D 답 749㎡ 중 제1심 판결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가) 부분 19㎡ 지상 철제컨테이너,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 지상 판넬지붕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 지상 판넬지붕 창고를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2010년 무렵 그 지상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원고의 형부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을 34 내지 3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불기소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원을 가진 점유자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춘호

판사박광우